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1. 25.(목) 총 7매(본문5)	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 로드맵	주택기금과	• 과장 김헌정, 사무관 박정란, 주무관 임지현 • ☎ (044) 201-3341, 3345 / 1599-0001 (콜센터)	
	주택도시보증공사	• 기금기획실장 최병태, 팀장 이정환, 차장 박호찬 • ☎ (02) 3771-6231, 6233 / 1566-9009 (콜센터)	
보 도 일 시	2018년 1월 26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6.(금) 06:00이후 보도 가능		

신혼부부 전용 구입·전세대출 출시...최저 1.2% 금리 전세대출

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·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

-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,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.
 - 또한,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·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.
 -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(17. 11. 29 발표)’ 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, 이 같은 내용의 청년·신혼부부·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.

< 주 요 내 용 >

① 청년 금융지원

- (청년 전용 버팀목전세) 만19세 ~ 25세 미만(단독세대주), 2천만 원 한도
- (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) 대출한도 상향(월 30 → 40만 원),
상환비율 완화(연장 시 25% → 10%)

② 신혼부부 금융지원

- (신혼부부 전용 전세)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(수도권 1.4→1.7억, 수도권 외 1→1.3억)
금리 최대 0.4%p 추가 우대(1.6~2.2% → 1.2~2.1%),
대출비율 상향조정(임대보증금 70% → 80%)
- (신혼부부 전용 구입)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
0.35%p 금리 추가인하(2.05%~2.95% → 1.70~2.75%)

③ 취약계층 금융지원

- (버팀목전세대출)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.2% 금리 우대

1.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

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】

- 반지하, 고시원,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(단독세대주)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.
- 다만,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, 상환 부담,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,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.
- 대출 금리는 연 2.3% ~ 2.7%으로 부동산 전자계약,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.

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주요내용 】

대출대상	만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	보증금한도	3천만 원 이하
대상주택	임차전용면적60㎡이하	대출한도	2천만 원 이하
대출금리	2.3 ~ 2.7%	대출기간	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)

*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.2%, 전자계약 0.1% 우대금리 적용 가능

【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】

-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.
- 월 대출 한도가 확대(30만 원→40만 원)되고, 대출 연장(2년 단위)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(25%→10%, 우대형) 조정된다.

【 월세대출 제도개선 현황 】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대출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30만 원(총 720만 원) (30만 원 × 24개월 = 720만 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40만 원(총 960만 원) (40만 원 × 24개월 = 960만 원) 	240만 원 상향
대출 상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회차 연장부터 대출금액의 25% 상환(일반형, 우대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회차 연장부터 대출금액의 10% 상환(우대형만 적용) 	상환비율 15%p 하향

* 우대형: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및 근로 장려금 수급자 등
일반형: 우대형이 아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

2.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

【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】

-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(혼인 5년 이내)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(수도권 1.4억→1.7억, 수도권 외 1억→1.3억)되고 대출 비율도 10%p 상향(임대보증금 70 → 80%)된다.
- 또한, 최대 0.4%p 추가 우대된 1.2%~2.1%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
【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안 】

구분	現 신혼부부 우대	신혼부부 전용 전세	비고
대출 한도	· 수도권 1.4억 원 · 수도권 외 1억 원	· 수도권 1.7억 원 · 수도권 외 1.3억 원	3천만 원 확대
대출 비율	· 임대보증금의 70%	· 임대보증금의 80%	10%p 상향
적용 금리	· 1.6% ~ 2.2%(기본금리에 신혼우대 0.7%p 적용된 금리)	· 1.2% ~ 2.1%(기존 우대 금리에 최대 0.4%p 추가)	최대 0.4%p 추가 우대

- 특히,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.1%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.10% ~ 2.00%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

【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】

-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(혼인 5년 이내)는 기존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.2%보다 최대 0.35%p 상향된 1.70% ~ 2.75%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- 아울러,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.1~0.2%p,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.1%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.50% ~ 2.45%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.

3.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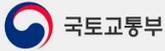
【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】

-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.2%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- 특히,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.1%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.0% ~ 2.2%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,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,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.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.”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(☎ 044-201-33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[주택도시기금 포털](#) 로 검색하시거나 국토부 콜센터 ☎ 1599-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--+ 청년층 전용 금융지원 +---

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전세 자금대출을 지원하고,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상향 등 금융지원 확대

1 청년(만 19세 이상~25세 미만) 전용 비팀목 전세대출 지원 (* 18.1.29 시행)

대상	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~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* (기존) 만25세 이상 → (개선) 만 19세 이상확대
대상주택	전용면적 60㎡ 이하 (60㎡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임차보증금	3천만원 이하
금리	연 2.3~2.7%
한도	2천만원 한도 (임차보증금의 70%)
상환기간	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(4회 연장, 최장 10년 가능)

2 주거안정 월세대출 (* 18.1.29 시행)

대상(우대형)	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,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, 부부 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 5년 이내 * 우대형 외에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형 월세대출도 운영
대상주택	전용면적 85㎡(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은 100㎡)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
한도	월 40만원 * (기존) 월 30만원 → (개선) 40만원 확대
금리	연 1.5% (우대형), 연 2.5% (일반형)
상환기간	2년 이내 일시상환 (4회 연장, 최장 10년 가능) * 우대형 한정해서 2년 단위 갱신 시 상환비율을 하향(25%→10%)



---+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+---

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상품 도입을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

1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(* 18.1.29 시행)

대상	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
대상주택	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100㎡)
임차보증금	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
한도	임차보증금의 80% 수도권 1.7억원 수도권 외 1.3억원 * (기존)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% → (개선) 80% * (기존) 수도권 1.4억/수도권 외 1억 → (개선) 수도권 1.7억/수도권 외 1.3억
금리	연 1.2%~2.1% * (기존) 비팀목 신혼가구 우대금리 0.7%P → (개선) 최대1.1%P
대출기간	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(4회 연장, 최장 10년 가능)

2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 (* 18.1.29 시행)

대상	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대상주택	시가 5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제외한 읍·면 100㎡)
한도	2억원 이내 (DTI 60%, LTV 70% 이내)
금리	연 1.70%~2.75% * (기존) 디딤돌 신혼가구 우대금리 0.2%P → (개선) 최대0.55%P
대출기간	만기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 1년 또는 무거치)

Q)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?

①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

- 주택도시기금 포털(<http://nhuf.molit.go.kr/>)


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
- 6개 기금 수탁은행

 1599-0800	 1599-1771	 1599-8000
 1566-2566	 1599-1111	 1588-2100

-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(☎ 1600-1004)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
②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